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균형인재의 정의 변경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8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발의배경	3
2. 개정안 주요내용	4
(1) 지역균형인재의 정의 변경	4
(2)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관련 자료 제출 절차 추가	9
(3)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12
(4) 지역인재 의무근무 신설	21
(5)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등 관리 강화	28
(6) 지역인재 정주 지원 신설	36
(7) 지역인재의 대학 입학기회 확대	41
(8) 전문직 의무복무 신설	48
(9) 교육격차영향평가 신설	5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26.

3. 회 부 일 : 2026. 3.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특정 지역 출신이 의대·로스쿨 등 전문직과 고위 공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더욱이 선발된 지역인재가 학위 취득 또는 경력 축적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후 수도권 본사로의 전보를 요구하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지방 의대 졸업생의 상당수가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하여 지방 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누수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기여하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5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발의배경

- 현행법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대학 입학기회 확대,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선발된 지역인재가 학위 취득 또는 경력 축적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거나 지방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하고,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후 근무 후 수도권 본사로 전보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된 재정과 행정력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정의를 비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규정하고,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입학기회와 공공기관등의 채용 비율을 확대하며, 지역인재 선발 또는 채용 실적이 부진한 학교 또는 기관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근무하면서 기여하도록 의무복무·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1) 지역균형인재의 정의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함)의 정의에서 현행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이외에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및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비수도권 거주 등의 요건을 추가함(안 2조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u><신설></u>	

현행	개정안
<신설> 3. (생략)	<u>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이 경우 같이 거주하는 부모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다.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u>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은 지역인재를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¹⁾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및 제6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인재의 (제12조)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와 (제14조) 대학 등의 우대채용, (제16조)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과 (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 (제20조) 정책 등의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1) 「지방대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역인재 요건인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더하여,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비수도권 실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과 비수도권 지역 거주를 추가하여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인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인재가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역인재의 범위가 현행법의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비수도권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는 사람으로 축소되며, 해당 내용이 지역인재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한 「지방대육성법」 전체에 적용되어 지역인재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의 적용대상이 축소됨.

또한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정의에 ‘부모의 비수도권 실거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적용대상인 지역인재 본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을 적용하여 과도한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현행법은 제15조제2항에서 지방대학의 의과·한 의과·치과·약학·간호대학에서 입학자의 일정비율을 지역의 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

학 소재지 고등학교 졸업,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 소재지 거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의 거주에 대한 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지역인재의 정의 등 비교]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제2호 • 지역인재의 정의 -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제2조(정의)제2호 • 지역인재의 정의 -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비수도권 실거주
*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제2항 • 의과·한의학·치과·약학·간호대학 입학자 중 일정비율 의무선발 요건 -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졸업 - 해당 지방대학 소재지 고등학교 졸업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 소재지 거주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 기획재정부, 대한의사협회는, 부모의 비수도권 거주 요건까지 포함하는 것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게 되고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의 지역인재 정의를 채용·입시 전반에 적용할 경우 공공기관 및 대학의 행정적 부담이 과중해지고 충분한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지역균형인재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경북대학교는 출신지역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정의하여 수도권 학생과 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

다는 점에서, 각각 해당 조항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충남대학교는 부모 거주 요건까지 추가될 경우 전국 단위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로스쿨 특성상 유효 지원 자격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도교육청 등은 지역인재의 정의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비수도권보다 교육서비스 및 생활여건이 낙후된 수도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우수대학 진학 후 다시 지역으로 회기한 유턴인재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홍익대학교) 수도권에 본교를 둔 교지분리대학의 지방캠퍼스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관련 자료 제출 절차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신규 임용 시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과 그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추가함(안 제12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u>국회</u>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교육부</u> <u>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에</u> ----- -----.

나. 검토의견

- 교육부는 지역인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관련 기본계획, 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인재의 채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²⁾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공무원 신규 임용 시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계획과 그 결과 등을 제출받는 절차가 마련될 경우, 지역인재의 공무원 선발 관련 제도와 결과의 파악이 적기에 쉽게 이루어져 지역인재 채용 관련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법」 담당 부처로서 지역인재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현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지역인재 채용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6.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⑥ 고등평생정책실에 대학정책과·대학학사운영과·학술연구정책과·대입정책과·지역대학지원과·산학협력지원과·국립대학지원과·사립대학지원과·대학시설지원과·평생학습정책과·전문대학지원과·청년장학지원과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둔다.

⑬ 지역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추진
6.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공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 협업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별 또는 초광역 협의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
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나, 교육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
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적용기관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의무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서도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제13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등은-----100분의 35-----채용하여야-----.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등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이----- 공공기관등은----- -----50-----

현행	개정안
<u>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1. <u>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u> 2. <u>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u> 3. <u>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 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u>	----- . <u><단서 삭제></u> <u><삭 제></u> <u><삭 제></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의 채용과 관련하여, ① 수도권 소재 기관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적용기관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에 따른 공공기관은 유지하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또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신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에서, ‘35%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함.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책무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에서도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채용 비율을 35%로 명시하면서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도권 소재 기관’에서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안 제2조제2호에서 지역인재의 요건으로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및 재학기간 동안 본인·부모 모두 비수도권 실거주를 추가하고, 지역인재가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비교: 수도권]

구분		현행	개정안
① 수도권 소재 기관 지역인재 채용 (안 제13조 제1항)	적용 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	-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채용 의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함

□ ②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기관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적용기관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을 유지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또한 지역인재의 신규 채용 의무비율을 35%에서 50%로 상향하는 한편,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기관에서 지역인재의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용기관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인재의 범위가 축소된 상황에서 지역인재 신규채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무비율 미만으로 지역인재가 지원하는 등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³⁾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들은 개정안의 제재 대상(안 제13조의4 이행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에 포함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3) 현행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2024년부터 도입되었고, 2024년 64.5%, 2025년 71.3% 등 의무비율 하한(35%)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음
(교육부, 「“지역 공공기관 신규채용 10명 중 7명은 지역인재”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 발표」 (2026.6.18.) 참고)

있으므로, 현행법과 같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비교: 비수도권]

구분		현행	개정안
② 비수도권 소재 기관 지역인재 채용 (안 제13조 제2항)	적용 기관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 기관	•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채용 의무	•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함	• 신규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함
	적용 예외	• 채용인원 소규모,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 확보 필요 등은 예외 적용 *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 1.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 2. 채용 분야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여 채용 3. 채용 분야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 4.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35% 미만 5. 신규 채용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35% 미만	※ 예외 없음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지역인재 신규 채용 의무비율(35% 이상)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의 경우 184개 기관 중 162개 기관이 의무비율 35% 이상을 준수하였고 3개 기관은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19개 기관은 연간 신규채용 인원 5명 이하 등의 사유로 예외를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외를 적용받던 기관들은 지역인재 신규 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2025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

구분		전체	준수 ¹⁾	미준수	예외 적용 ²⁾
기관 수		184개	162개	3개	19개
신규채용 인원 수	전체	17,871명	17,753명	39명	79명
	지역인재	12,742명	12,720명	8명	14명
	지역인재 비율	71.3%	71.6 %	20.5%	17.7 %

주: 1) 예외 적용 대상 기관임에도 신규 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한 경우 준수 기관에 포함

2) 예외 적용 기관 중 6개 기관은 신규직원 미채용

자료: 교육부

□ 아울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채용과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는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청년할당제)하고 있으나 적용기관을 한정하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⁴⁾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21477호, 2026.3.17. 개정, 2026.9.18.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률 제11792호(2013. 5. 22.)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법률 제11792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12.27., 2018.12.31., 2021.12.21., 2023.12.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참고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⁵⁾에서는 심판관 다수(9인 중 5인)가 위헌의견이었으나 해당 인원이 심판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바 있는데,⁶⁾

위헌의견의 내용에는 청년할당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다른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정원 외 고용 할당, 자발적 추가 고용 시 재정지원, 조세감면 혜택 등의 도입으로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합헌의견에서도 동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3헌마553, 2014.8.28. 전원재판부)

6)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제1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2항)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규 채용 의무비율 확대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 취지 및 지역인재의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동의하나 관련 부처(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지원자 부족 등 기관의 귀책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 적용 예외에 대한 일부 단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재정경제부는 응시자 수가 많은 의과대학 등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기준을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고, 개정안의 신규 채용 의무비율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공공기관 및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채용·선발 의무 확대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개인의 자격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일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고용할당제를 도입한 유사 입법례는 대부분 정원외 고용할당, 자발적 추가 고용에 대한 지원 혜택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

으며,⁷⁾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할당제로 헌법재판소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제5조제1항(청년할당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하였으나, 5인의 위헌의견이 있었다는 점에서, 각각 해당 조항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3조의3·제23조의4·제25조·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지역인재 의무근무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에 채용된 지역인재가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3조의2(지역인재의 의무근무) ①</u> <u>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지역인재는 채용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이하 “의무근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의무근무 기간 동안 지역인재를 수도권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지역인재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u>

현행	개정안
	을 받아 전보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 멘토링, 산학협력 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인사 고과 및 승진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의무근무 및 지역사회 기여 이행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및 전보, 제4항에 따른 실태 조사·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13조의2에서 (제1항) 공공기관등에 채용된 지역인재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 근무하고(이하 “의무근무”라 함), (제2항)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3항) 공공기관등의 장이 지역인재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장려하고, 그 실적을 인사 고과 및 승진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제4항) 교육부장관이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의무근무 및 지역사회 기여 이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개정안에서 지역인재가 의무근무와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지역인재의 인사, 공공기관의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등에 채용된 지역인재가 해당 공공기관등의 소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기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은 기구 개편, 직제 변경,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인재가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유 이외에도 각 공공기관등의 상황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전보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직원의 전보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사항에 포함될 경우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제3항) 개정안에서 지역인재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실적을 인사 고과 및 승진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직원 인사와 관련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 고과 및 승진 심사에서, 지역인재가 아닌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공공기관운영법」은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⁸⁾ 「지방공기업법」은 인사운영의 공통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⁹⁾ 「지방대육성법」에서 공공기관등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음.

8)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경영지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9)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또한 개정안은 (제4항) 교육부장관에 대해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의무근무 및 지역사회 기여 이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¹⁰⁾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3조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의무비율 준수 적용기관에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도 포함되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도 의무근무 등이 적용되므로, 의무근무 등의 결과를 반영하는 평가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¹¹⁾를 포함하여 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등이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소관임을 고려하여 해당 부처와 협조하거나 해당 부처를 포함한 위원회를 통해 지역인재 의무근무 및 지역사회 기여 이행 실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조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1)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제1항 및 제2항) 교육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는 근무지를 최대 10년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사 입법례¹²⁾에 비추어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제3항)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영지침에 해당하므로, 「지방대육성법」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제4항 및 제5항) 개정안의 조사 대상의 범위가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되고¹³⁾ 개인 단위 추적이 필요하여 전담지원기관 지정 및

1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국외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2025년 기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기관 수 약 330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기관 수 280개

예산·인력 확보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재정경제부는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평가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등 관리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평가 결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을 요구하고, 개선계획 미제출 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경고 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지역인재 채용 실적 평가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권리를 침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3조의4(이행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부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을 요구받은 부진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교육부장관은 부진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개선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u>

현행	개정안
	<u>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u> <u>1. 공공기관등의 장에 대한 경고 또는 해임</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시 감점</u> <u>3. 다음 연도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진기관의 판단 기준, 조치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13조의3에서 교육부장관이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13조의4에서는 제13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선계획 수립·제출을 요구하고, 개선계획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 미이행 기관에 대해 기관장 경고 또는 해임, 경영실적 평가 시 감점, 다음 연도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10% 범위 이내 감액 등의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

정함.

개정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부진기관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제출 등을 요구하며, 개선이 미흡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인재 신규 채용 의무비율 준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제2조제2호에서 지역인재의 범위를 축소하고 제13조에서 지역인재 신규 채용 의무비율과 적용기관을 확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관의 상황에 따라 지역인재 신규 채용 의무비율 준수를 위한 개선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기관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실적 평가 감점, 출연금 감액 등의 조치를 받아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러한 조치 건의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개정안 제13조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의무비율 준수 적용기관에 공공기관 이외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도 포함되므로, 제도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감점을 적용할 수 있는 평가를 규정한 제13조의4제3항제2호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이외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법은 제13조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¹⁴⁾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⁵⁾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재정경제부차관, 위원장이 위촉하는 시·도지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됨.¹⁶⁾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에 대해 매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장이

14) 「지방대육성법」(법률 제21333호, 2026.2.10. 개정, 2026.8.11. 시행) 기준
: 「지방대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로 변경

15) 「지방대육성법」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6) 「고등교육법」

제59조의6(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시·도지사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 법 제59조의7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2. 법무부차관
3. 고용노동부차관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 제 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시 감점을 부여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등이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소관임을 고려하여 해당 부처와 협조하거나 현행 제도와 유사하게 해당 부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지역인재 신규 채용 의무비율 준수 등의 실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조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는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또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¹⁷⁾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17)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차관
- 2의2. 기획예산처차관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4. 인사혁신처장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제13조의3)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 주관부처로서 지역인재의 성장-취업의 연장선상에서 채용 현황을 종합 관리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 지방 공사 및공단도 포함되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정경제부는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채용현황을 매년 공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제13조의4) 교육부는 채용의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행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평가 기준 마련 및 집행을 위한 전담지원체계 구축, 예산·인력 확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8)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소멸 위기 지역 인재 채용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각각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임면은 정부 시책에 부합하도록 기관을 경영하였는지를 포함하여 직무 전문성, 경영성과, 윤리성, 조직 내 신인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역 인재 채용 실적 부진만을 사유로 경고 또는 해임까지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현행 경영실적평가 시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에서 지역 인재 채용 노력·성과를 평가 중이므로, 부진기관에 대해 평가 감점 조문을 신설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6) 지역인재 정주 지원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에 채용되어 의무근무하거나 의무복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의무복무하는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3조의5(지역균형인재의 정주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은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라 의무근무 또는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u> <u>2. 주택의 매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이자 보전</u> <u>3. 사택 또는 기숙사의 제공</u> <u>4.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 감면</u> <u>5. 그 밖에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u>

현행	개정안
	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주 지원의 구체적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

또한 2026.2.10. 개정되어 2026.8.11.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 정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²⁰⁾

19) 「지방대육성법」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 「지방대육성법」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도(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기타 내용 생략)

제6조(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13조의2에 따라 의무근무하거나 제15조의2에 따라 의무복무하는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 등의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1호)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의 위임을 받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사업의 시행 주체, 공급 대상 주택의 범위,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²¹⁾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적용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2호) ‘주택의 매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이자 보전’은 주택 마련이 필요한 지역인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채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원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장 주택공급 방법

- 제3절 우선공급: 제30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제31조의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등
- 제4절 특별공급: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등

(제4호) ‘「지방세특례제한법」²²⁾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지역인재 관련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령 등에는 지역인재 관련 지방세 감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역인재 관련 지방세 감면이 규정된 후에 개정안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나, 각 지원책은 타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토교통부는 (제1호 주택공급의 특례) 현재도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고, (제2호 주택자금 지원)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가계대출 축소 상황에서 일부 차주에 대한 혜택 적용은 정책 기조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부채성 재원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성, 개정안의 적용대상과 유사한 소득·자산 수준의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제4호 지방세 감면)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관계법을 통해서만 규정 가능한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수반하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각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지역인재의 대학 입학기회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 입학기회 확대 규정을 지역인재에 대해 적용하고, 대상 과정을 의과·한 의과·치과·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며, 의무선발 비율을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 미준수 대학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생략)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대학의-----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문직 양성과정”이라 한다)-----지역인재의-----100분 50-----.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삭 제>

현행	개정안
<u>중학교를 졸업할 것</u> 2. <u>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u> 3. <u>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u> ③ <u>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④ ~ ⑥ (생략) <u><신설></u> <u><신설></u>	<u><삭제></u> <u><삭제></u> 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지방대학의 장은 전문직 양성과정의 입학자 중 지역인재의-----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u>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전문직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지방대학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지역인재 선발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⑧ <u>교육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지방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1. <u>해당 전문직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u>

현행	개정안
<신설>	<u>부 중단</u> 2. <u>지역인재 선발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 수의 2배 범위 내에서의 다음 연도의 입학정원 감축</u> 3. <u>해당 대학에 대한 각종 평가 시 불이익 부여</u> ⑨ <u>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선발 방법·절차 및 제8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대학 입학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제15조에서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의과·한 의과·치과·약학·간호대학 입학생 중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 소재지 고등학교 졸업,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 소재지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제3항)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생이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한편, 개정안은 제1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대학의 장과 받지 않는 지방대학의 장을 구분하고,

(제1항)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의과·한의학·치과·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지역인재가 입학 전체인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제2항)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지역인재에 대해 의학·법학 등 전문분야에서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대학에 대해 지역인재 육성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대학 입학기회 확대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제15조 제2항	선발주체	• 지방대학의 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대학의 장
	대상과정	• 의과·한의학·치과·약학·간호대학	• 의과·한의학·치과·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선발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졸업 - 해당 지방대학 소재지 고등학교 졸업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 소재지 거주	• 지역인재 -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비수도권 실거주 -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선발의무	•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제15조 제3항	선발주체	• 지방대학의 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지방대학의 장
	대상과정	•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 의과·한의학·치과·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선발요건	•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지역인재 -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비수도권 실거주 -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선발의무	•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① 선발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대학과 받지 않는 지방대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 기준이 되는 ‘재정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입학기회 확대 ② 대상 과정으로 ‘의과·한의학·치과·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③ 선발 요건인 지역인재의 정의를 적용하면 비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및 실거주 후 지방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에만 해당 과정의 입학기회 확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입학(의과·한의학·치과·약학대학)의 경우 지방대학 재학 또는 졸업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④ 현행법에서 선발 의무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 과정별·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비율을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선발 의무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비율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인재의 범위가 축소된 상황에서 현행법에 비하여 상향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은 제15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장이 지역인재 선발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은 의무비율 미준수 지방대학에 대하여 국가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미달 인원 수 2배 범위 내에서의 다음 연도 입학정원 감축, 각종 평가 시 불이익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지방대학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대학은 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제2항) 지역인재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의사제가 도입(2027년)되는 의과대학 이외의 과정에 대한 적용은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별 차등 비율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3항) 재정지원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대학 입학전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²³⁾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대학의 지역인재 모집·선발 절차상의 의무이행시 면책 조항을 규정하고, 입학정원 감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3)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적인 입시준비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예고제(4년 예고제)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지역인재 선발 의무비율을 확대하여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는 상황에 맞는 차등화, 미충원 발생 시 일반전형으로의 전환 선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정책 및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해당 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8) 전문직 의무복무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제15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직 양성과정 (의과·한의학·치과·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선발된 지역인재 중 지역의무복무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해당 학생은 10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에 종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과 면허 또는 자격 취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전문직 양성과정 지역인재의 의무복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무복무 장학생(이하 “의무복무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의무복무학생은 의사·치과의사·한 의사·약사 면허 또는 변호사

현행	개정안
	<u>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공공보건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u> <u>③ 의무복무기간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기간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실무 수습 기간을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산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의무복무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u> <u>1.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현행	개정안
	<u>2. 의무복무학생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자격을 포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학생이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 내역, 의무복무 관리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15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직 양성과정에 선발된 지역인재 중에서 지역의무복무 장학생(이하 “의무복무학생”이라 함)을 선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 지원과 의무복무, 의무복무 미이행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 중에서 의무복무학생을 선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제15조제2항)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대학의 장’이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제15조의2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중에서 의무복무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²⁴⁾ 제15조의2제1항의 의무복무학생 선발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의 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생활비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비용의 지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의무복무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소요 재정 규모의 추계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4) 「지방대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 개정안은 제2항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의무복무학생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면허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에서 종사하도록 하고(이하 “의무복무”라 함),

제4항 및 제5항에서 의무복무학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을 반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의무복무학생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의무복무 미이행 기간 동안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재정지원을 받은 의무복무학생에 대해 지방대학 소재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금 반환, 면허 또는 자격 취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무복무학생이 의무복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6.2.24.부터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법”이라 함)」 시행으로,²⁵⁾

25) 「지역의사법」 (법률 제21239호, 2025.12.23. 제정, 2026.2.24.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무형 지역의사 제도’가 도입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아 의무복무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²⁶⁾ 해당 대학 소재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입학금 등을 지원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의무근무하는 공통점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그 효과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과대학 이외에 한의과·치과·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범위를 넓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지원받은 의무복무학생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 검사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각급 법원, 검찰청 등에 배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²⁷⁾ 의무복무 제도

26) 「지역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복무형 지역의사”라 한다)

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이하 “전문의”라 한다)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계약형 지역의사”라 한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 적용 가능 여부, 필요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별도로 의무복무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관련하여 그 비율을 시·도별 의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취약지의 분포,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지역에 복무하는 의사의 수를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²⁸⁾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여건을 파악하고 지원 규모를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7)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28) 「지역의사법」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의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분포 및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지역별 분포,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또한 개정안은 의무복무학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반환 이외에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효력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유사한 「지역의사법」에서도 지원금 반환 이외에 자격 정지, 면허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복무 미이행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²⁹⁾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재 수준, 절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9) 「지역의사법」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②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의무복무)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17조(면허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1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 참고로 현행법의 지역인재로 의과·한 의과·치과·약학·간호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입학금 등 지원 및 복무의무 비교]

구분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현행 「지역의사법」
	최혁진의원안(제17781호)	주진우의원안(제17160호)	
대상	(제15조의2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대학의 의과·한 의과·치과·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 비수도권 소재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비수도권 실거주 -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제15조제2항) • 지방대학의 의과·한 의과·치과·약학·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 비수도권 소재 지역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자 - 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 소재 지역 거주자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의학 교육과정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함 •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다음 사람을 선발하여야 함 - 해당 의과대학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고등학교는 졸업예정자 포함)자 - 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 소재 지역 거주자
		(제15조제3항) • 지방대학의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생	(제4조제1항) • 위의 요건 외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
재정 지원	(제15조의2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여야 함	(제15조제5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지원 가능	(제5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여야 함
복무 의무	(제15조의2제2항) • 면허 또는 자격 취득 후 10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 법률구조기관 등에 종사하여야 함	(제15조제5항) •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	(제7조제1항) •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역의 사법」 시행(2026.2.)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복무형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학비(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제도를 도입 중으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정책을 「지방대육성법」에 규정하는 것은 중복입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역의사제와 연계·협력 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도 지역의사제와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법무부는 지역인재의 의무근무를 최대 10년까지 규정한 것은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직업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의무복무학생의 선발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지역에서의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의 침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타당성 연구,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해당 조항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부산대학교는 변호사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는 등 지역 정착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9) 교육격차영향평가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교육격차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이하 “교육격차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격차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정책 2.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에 관한 정책 3.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정책

현행	개정안
	<u>4. 그 밖에 지역 간 교육 격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격차영향평가 결과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④ 교육격차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20조의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것을 “교육격차영향평가”로 규정하고, 교육격차영향평가 결과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이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수립하는 단계
에서부터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계획 및 정책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교육격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또
는 정책으로 대학입학전형 제도, 학자금 지원, 대학 재정지원사업
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매년 유사한 내용이 시
행되거나 소득 등 지역 이외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
격차영향평가를 시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격차영
향평가의 범위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이나 학자금 지원 기준 등 연례적 정책에 교육격차
영향평가가 적용될 경우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가
장학금은 지역과 무관하게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와는 관련성이 적으며,

교육격차는 대학 진학 결과만의 문제가 아닌 영·유아 돌봄, 초·
중·고 기초학력, 교원 수급, 지역의 소득·문화·의료 인프라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거시적 문제이므로, 고등교육 단

계의 지역대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대육성법」의 취지에
비추어 교육격차영향평가를 동 법 체계 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신
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